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
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송미령 (농림축산식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유림에 숲속야영장을 조성할 경우 지방산림청에서 조성하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에서 운영하는 데 따른 국유재산 관리전환 및 회계간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 숲속야영장의 조성·운영자를 일원화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국립 숲속야영장의 조성 및 타당성평가 업무의 지방산림청장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변경

* <조성 권한>

- 지방산림청장 : (당초) 산림욕장, 치유의 숲,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
→ (변경) 산림욕장, 치유의 숲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

** <타당성평가 권한>

- 지방산림청장 : (당초) 국유림에 조성되는 산림욕장, 치유의 숲,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 → (변경) 국유림에 조성되는 산림욕장, 치유의 숲 및 산림레포츠시설
-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: (당초) 국유 자연휴양림 → (변경) 국유 자연휴양림, 국유림에 조성되는 숲속야영장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입법예고전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: 예정(2024. 5. . ~ 6 .)

3) 행정규제 : 신설 및 강화 규제 없음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항제3호 중 “숲, 숲속야영장”을 “숲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“조성”을 “조성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숲속야영장의 조성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“숲, 숲속야영장”을 “숲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의2 중 “국유 자연휴양림”을 “국유 자연휴양림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에 조성되는 숲속야영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5조(권한의 위임) ① (생략)	제15조(권한의 위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욕장, 치유의 숲,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	3. ----- ----- 숲 ----- -----
③ 삭제	
④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-----.
1.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유자연휴양림의 조성	1. ----- ----- 조성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숲속야영장의 조성
2. 삭제	
3. ~ 4. (생략)	3. ~ 4. (현행과 같음)
⑤ 산림청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법 제21조의2에 따른 타당성평가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	⑤ ----- ----- -----

의 기준에 따라 지방산림청장·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한다. 1. 지방산림청장: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에 조성되는 산림욕장, 치유의 <u>숲, 숲속야영장</u> 및 산림레포츠시설 1의2.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: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<u>국유 자연휴양림</u> 2. (생략) ⑥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- <u>숲</u> ----- ----- 1의2. ----- ----- -- <u>국유 자연휴양림 및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유림에 조성되는 숲속야영장</u> 2.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
---	---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	
연 락 처	(042) 481 - 4211